

「리틀빅 정기예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리틀빅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백만원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콜센터는 1만원) 이상이며, 최고 5백만원 이내로 한다.

제6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항과 제4항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이 예금의 신규일에 하나카드의 체크카드를 신규하는 경우 또는 이 예금을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콜센터에서 가입하는 경우 예금액 중 1백만원에 대해 연 0.5%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.
- ④ 이 예금을 가입 후 1년 이내(만기전 1개월까지)에 하나카드(체크카드 포함)를 100만원 이상 KEB하나은행 계좌로 결제하는 경우 연 0.3%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.
- ⑤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
제7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
제8조 일부해지

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하며, 금리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.
단,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7월 1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